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219-0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4

| 글로벌 반부패 정책 동향

2023 April

Vol. 124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3년 4월 1일(매월발행, 통권 124호, 비매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7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발행인: 전현희

110

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의신고



COVER STORY

2022년 5월 23일 출범된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2022년 11월 15일 개최된 G20 정상회의, 2023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국제 회의와 협의체들은 제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식량 및 공급망 안정성 등 세계가 마주한 현안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속에서 반부패는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4월호에는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안건과 정책을 살펴보고, 민간 차원의 영향과 역할(실천방안) 등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01	보고서리뷰	04
민주주의 정상회의, G20, IPEF 와 반부패 정책 동향 Fact Sheet: Summit for Democracy: Progress in the Year of Action 외		
02	전문가 코칭	12
국제조세 개혁과 청렴·공정경제 이경근 교수		
03	사례돌보기	16
금융업의 자금세탁 방지와 뇌물 방지 경영사례		
04	행동하는 윤리경영	19
청렴윤리경영: 부패발생 예방 및 대응체계		
05	문화 속 기업윤리	24
자금세탁 폐해와 방지 노력 영화, '시크릿 세탁소'		
06	뉴스클립	25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07	웹툰 윤리네컷	28
글로벌 비즈니스 윤리		
08	행사소식	29
09	퀴즈	30



보고서리뷰

민주주의 정상회의, G20, IPEF와 반부패 정책 동향

■ 보고서: THE WHITE HOUSE(2022), Fact Sheet:
Summit for Democracy: Progress in the Year of Action
2022년 G20 발리 정상 선언문(2022)
IPEF각료 회의 보고서(2022) 외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국제 협력체 및 국제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부패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다. 회의 결과문 및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과 국제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백악관의 Fact Sheet(Fact Sheet: Summit for Democracy: Progress in the Year of Action), 2022년 G20 발리 정상 선언문, IPEF각료 회의 보고서(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를 기반으로 최신 기사 및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강화와 인권을 증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목적으로 열린 미국 주도의 비대면 회의다. 이 행사는 2021년 12월 9일 처음 개회하여 이틀간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약 110개국이 초청되었고, 정부 외에도 다자간 기관, 활동가, 언론인, 국회의원, 인권 옹호자, 기업 및 노동분야 지도자 등 대표자 275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2021년 제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아젠다는 (1)민주주의 강화 및 권위주의에 대응, (2)부패 척결, (3)인권 존중 세 가지이며, 이를 중심으로 권위주의적 침해, 급진주의와 극단주의, 경제적 불평등, 기후 위기 등에 대한 대응과 정보 청렴성을 논의하였다. 각 지도자들은 위의 세가지 아젠다에 따라 민주주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했다.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의 서약 사항〉

- 공익 미디어를 위한 국제 기금의 대의 공유, 전 세계 독립 미디어 보호 노력에 동참
- 개발도상국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확대
- **부패 및 뇌물 방지법, 이해 충돌 방지법,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등 부패 방지 정책 공유**
- 개발도상국과 전자정부 시스템 공유로 정부 혁신 촉진 및 투명성 향상

출처: Leaders' Commitments:

<https://www.state.gov/leaders-commitments-the-summit-for-democracy/#RepublicofKorea>

또한, 미국은 (1)미디어의 자유와 독립, (2)부패 퇴치, (3)민주적 개혁가 강화, (4)민주주의를 위한 기술발전, (5)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및 포용적 정치과정 분야에 대해 노력할 것을 서약하였다.

2023년 03.29.(수)부터 이틀간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인류 안보와 번영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은 인태지역을 대표하여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3월 30일에 ‘부패 대응을 위한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반부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반부패 서약 실행: ‘행동의 해’ 진행사항

미국은 2021년 민주주의 정상회담 이후 탄력적인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반부패 인권 수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 ‘Fact Sheet: Summit for Democracy: Progress in the Year of Action’ 는

미국이 민주주의 간신을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약을 이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지대한 미국의 반부패 정책 이행 사항을 참고하면 글로벌 반부패 동향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서약 이행 사항 중 부패방지 및 퇴치를 위해 실행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는 우선, 부패 문제 해결조치를 강화하고자 최초의 ‘글로벌 반부패 조정관’을 임명하고 미국의 대외 원조기관인 미국 국제 개발처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통해 부패 조사 프로그램 및 반부패 전담 기관들을 지원하는 등 부패방지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국가 차원에서는 반부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2022 회계연도에는 반부패 해외 지원 프로그램에 2억 5,8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쓰는 등 반부패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국무부와 재무부는 ASET(신흥 기술을 통한 부패 방지 솔루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패 대응 기술(예: 해상운송 부패 위험 평가 등)을 개발하고 있고 USAID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 해결책을 발굴하여 초국가적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부패에 대한 미국의 규제 조치와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¹⁾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의 제재 프로그램을 통해 부패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의 비자를 제한하거나 금융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전세계 정부의 부패 관련 자산을 억제, 회수 및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재무부의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는 불법 행위자의 익명의 회사를 통한 부패수익 은폐방지 규정을 발표하고 불법 행위자가 부동산을 익명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발 중이다. 이와 비슷하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쟁 무기로 혜택을 보는 국가 및 사람에게 제재 부과 조치로 책임을 묻기도 한다.

미국의 정부기관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G20, G7, UN 반부패법 집행기관(GlobE Network)와 협력하여 부패방지 표준 조치를 개선하고 반부패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부, 공무원의 협의를 주최하는 등 다자간 협력과 참여를 통해 반부패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 인권침해, 부패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

G20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인한 전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금융·통화질서 수립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출범하였다.

참여국은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을 포함한 호주, 한국, 브라질 등으로 당시 국제경제에서 신흥경제국들의 비중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 첫 회의 이후 매년 각기 다른 도시에서 개최되어 시기별 경제적 현안들이 의제로 논의되었다.

G20은 반부패 실무 그룹회의를 통해 꾸준히 반부패를 다룬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G20 반부패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을 채택하여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국제 반부패 체제 수립 지지를 명시하였으며 2010년부터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회원국 반부패기관 관계자들이 각국의 반부패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말 G20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함께 국제조세개혁에 대한 글로벌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를 구성하여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BEPS),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개혁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2022년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 17차 G20회의는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현안에 대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최되었고, 2022년 G20 정상선언문에서는 세계경제 둔화, 일자리,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분쟁, 코로나 19가 야기한 문제 상황에서의 회복, 디지털 기술, 반부패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2정상선언문의 반부패 조항

각 참여국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표명하고, 법적 수단을 포함한 반부패 노력 이행의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상들은 2022년 G20 정상회담의 키워드인 '회복'을 위한 집단적 노력의 핵심요소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어 청렴성이 다자간 협력에도 중요시됨을 보여준다. 참여국들은 G20 정상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부패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상선언문 49-50번 조항〉

뇌물 예방과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공여 범죄화: UN부패방지조약(UNCAC) 제16조에 따른 외국 뇌물 공여 범죄화 - 국제 협력, 법적 프레임 워크의 강화로 경제 범죄 척결: 현존 네트워크와 이니셔티브 (GlobE, G20 입국거부전문가네트워크(G20 Denial of Entry Experts Network) 등) 활용 - OECD 뇌물방지 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참여 확대 - 규범적 규제: 국내법규 조정 조치에 대한 정보 공유 - 부패행위자와 범죄자금 피난처 제공 방지 국내법 마련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²⁾ 에 대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FATF 지역기구(FSRB)들의 전략적 우선순위 도출 - 가상자산: 국제표준 '트래블 룰(travel rule)' 구현, 실소유자 투명성 촉진을 위한 FATF의 이니셔티브 확보 - FATF 작업 지원(범죄 수익 몰수, 피해자와 국가에의 자금반환 노력 강화) - G20 모든 회원국의 FATF 표준 채택 및 효과적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분야에서의 부패 위험 감소 - 청렴문화 발전 -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여 및 참여 촉진

출처: 2022 G20 발리 정상선언문

2)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이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는 2022년 5월 23일에 무역 촉진, 공급망 안보 구축, 디지털 경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기준, 친환경-클린에너지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 협력체 달성을 위해 출범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7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IPEF 출범식에 참여했으며 5월 27일 피지(Fiji) 공화국이 추가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해결과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 등의 리스크 관리 및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총 4개의 필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4가지 주요 필라〉

- (1)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 (2)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 (3) 청정경제(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 (4) **공정경제(조세 협력 및 반부패)**

출처: Summit for Democracy: Call to the Private Sector to Advance Democracy

백악관의 ‘FACT SHEET: In Asia, President Biden and a Dozen Indo-Pacific Partners Launc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따르면 위 4개의 필라와 관련된 위협들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과거 경제 모델의 취약점이었으며,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IPEF에서는 공급망에서 부패, 조세 피난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경제를 강화하고자 네번째 필라에서 반부패를 다루고 있다

공정경제 필라

IPEF는 4번 필라인 ‘공정경제’ 영역에서 조세협력, 반부패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통상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 서약 국가들이 공정 경제 촉진을 위한 세금, 자금세탁방지 및 뇌물방지 제도 제정 및 시행(조세정보

교환, UN기준의 뇌물죄 범죄화, 부패척결을 위한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권고안³⁾의 효과적인 이행 조항 포함) 등에 대해 동참하기를 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IPEF 각료 선언문을 참고하면 22년 9월에 열린 'IPEF각료회의'에서는 공정경제 필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했다.

〈IPEF각료회의의 '공정경제 필라' 합의 사항〉

조세	-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 지지 - 효율적 행정관행을 통한 조세 행정 개선 협력 - 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지지 합의
반부패	-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 이행강화 합의(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개도국 지원	-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이행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 지원방안 논의(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자료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민간차원의 대응 및 반부패 행동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G20, IPEF의 보고서들을 참고하면 각 협의안에서 공통적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 강화와 자금세탁방지, 정책 입안(국내법 등)을 통한 뇌물죄 범죄화, 조세 및 범죄자금 피난처 방지를 언급한다. 이에 민간기업은 위 이슈들과 관련된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중점으로 한 경영활동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반부패 행동에 동참하려는 기업이라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발간한 'Summit for Democracy: Call to the Private Sector to Advance Democracy'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적인 국가일수록 GDP 는 증가하고, 사회불안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가 경제개혁을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나 기업 투자가 더 활발하다고 한다.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쇄신과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3) 수익소유권이란 법적 소유권(legal ownership)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 FATF는 국가와 관할 당국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법인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인의 수익적 소유권 및 통제 정보의 적절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간영역은 민간부문 라운드 테이블, 기업 이행사항 공유, 민간부문 행사 개최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패는 불공정하고 독단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장, 비효율성, 시장왜곡, 성장과 생산성 저해의 원인이다. 또한, 부패는 투자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필수적인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약화하며 빙ゴ과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패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민간 부문에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민간 행동 예시〉

- (1) 윤리 준수 및 부패 불관용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명시와 리더십
- (2) 부패 감지 및 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
- (3) 모든 수준에서 효율성,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 방법 촉진
(예: 전자 정부 솔루션 사용)
- (4) 실소유권 및 계약 투명성 등 주요 반부패 조치 옹호
: 합법적인 공급망의 협력을 포함한 초국가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 지원
- (5) 관련 이해 관계자 교육(예: 공급업체)
- (6)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및 공공 민간 파트너십 참여

출처: Summit for Democracy: Call to the Private Sector to Advance Democracy

참고

- G20 (2022.11), G20 BALI LEADERS DECLARATION(G20 정상선언문)
- KIEP 세계경제 포커스(2022.06.10) '아세안 주요국의 IPEF 참여 배경과 전망'
-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2022.9.9), IPEF 각료선언문,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 THE WHITE HOUSE(2022.11.29), 'Fact Sheet: Summit for Democracy: Progress in the Year of Action'
- THE WHITE HOUSE(2022.5.23), 'FACT SHEET: In Asia, President Biden and a Dozen Indo-Pacific Partners Launc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U.S. Department of State(2023.2), 'Summit for Democracy: Call to the Private Sector to Advance Democracy'
- <https://www.acrc.go.kr/briefs/201707/sub6.html>
-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9155600004>
- <https://cfatf-gafic.org/index.php/documents/fatf-40r/390-fatf-recommendation-24-transparency-and-beneficial-ownership-of-legal-persons>



국제조세 개혁과 청렴·공정경제

전문가 코칭

이 경 근 교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조세 및 반부패 정책 동향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경근 교수를 인터뷰하였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식량 및 공급망 불안정성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각 국가와 국제 행위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국가 협력체, 회의에서는 현안 대응을 위한 해결 과제로 반부패를 꼽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 투명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OECD·G20가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국제조세 개혁을 논의하고,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는 주요 필라 중 하나로 조세와 반부패를 선정하였다.

이번 달 전문가 코칭에서는 국제 조세 전문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법무법인 율촌 고문)를 모시고 다자간협력체와 국제회의에서 공정 경제와 조세 정책이 논의되는 이유와 조세정책과 공정경제, 반부패의 상관성, 조세 관련된 정책의 변화 및 영향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Q1> 논의되고 있는 국제조세 개혁(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 글로벌최저한세 등)의 의미는 무엇이며, 조세와 공정경제 반부패 투명경영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국제조세 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조세 체계를 구축하고, 조세 회피와 탈세를 방지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조세 개혁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는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은 정보의 유형과 정보의 제공 방식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 중의 하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방식입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협의가 있을 때 어느 한 국가의 과세당국이 그 협의 사실을 제시하면서 상대국의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과세당국이 사안을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자동적 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방식입니다. 이는 어느 한 국가(A국)의 거주자가 상대국(B국)의 여러 원천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정보가 법적 제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상대국(B국)으로부터 A국에 제공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정보는 대량으로 제공되므로 구체적·개별적 요청이 아니라 미리 정한 표준양식(a standard form and format)에 따라 자동적으로 교환되며 현재는 주로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이에 해당되어 교환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발적 정보교환(spontaneous exchange of information) 방식입니다. 거래내용이나 증빙으로 보아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탈세 또는 조세회피 협의가 있을 경우, 체약상대국의 정보교환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체약상대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정보는 대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이 상대국 납세자의 국제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글로벌포럼’에서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 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탈세와 국제적 조세회피를 줄이기 위해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외탈세나 국제적 조세회피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란, 기업이 국내외 어디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세제를 말합니다.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한 전세계 139개국의 Inclusive Framework 참가국가들은 2021년 7월에 이러한 글로벌최저한세에 합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년에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보유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설령 저세율국가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의 세금을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 소재지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다국적기업들은 저세율국에 진출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시도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해한 조세 경쟁이 방지됨으로써 좀더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세와 공정경제 반부패 투명경영은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 체계가 공정하지 않거나 조세행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려는 납세의식(Tax Morale)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탈세나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패현상이 확산되고 거래의 투명성은 더욱 저하될 것입니다.

한편 부패한 경영 또는 불투명한 경영은 조세 공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과 유대 관계를 맺은 기업들이 해당 정치인이나 공무원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대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감추는 등의 부정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경영은 조세 당국들이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만들어, 기업들의 탈세나 조세회피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Q2) 공정경제를 위한 조세의 투명성 제고로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에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이며, 기업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최근 기업의 조세 투명성은 그 기준이 국제적으로 많이 높아져 날이 갈수록 기업의 주요 사업 및 투자 활동 내용은 자국의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과세당국에 모두 공개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국가간의 정보교환이 단순한 세무신고사항이나 금융계좌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다국적기업의 거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전가격⁴⁾ 관련 문서(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를 거래 상대국 과세당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여 각국의 과세당국이 서로 이전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관련 문서 구성〉

마스터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성격의 정보를 담은 파일-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직도, 사업 설명, 무형자산, 관계사간 금융거래, 재무현황-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 운영, 이전가격정책 등
로컬 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국 과세당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로 구성 되어 있는 파일- 다국적기업의 현지기업이 다른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회사들과 행한 거래의 거래가격, 거래량 등에 대한 정보- 현지기업의 기능과 자산, 부담위험 등 이전가격 결정을 위한 분석 내용 및 기타
국가별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적기업의 활동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고용자수, 자본금, 유보이익, 유형자산 등에 대한 통계자료- 국가별로 해당국에서 활동중인 개별기업의 리스트 및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

4)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국제거래에서 다국적 기업간의 이전가격 조작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 이전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세금을 '이전가격세'라고 함.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들은 현지 기업이 현지 과세당국에 매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입니다. 한편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작성하여 관할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국가의 과세당국은 조세조약상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협약에 규정된 정보교환 방식을 통해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날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사실관계를 기술적으로 감추는 것이 이제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실관계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세무조사 시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여행에 가까운 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회사 소유구조, 역외투자구조, 해외계좌 등 모든 정보 및 사실관계가 국내외 과세당국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노출된다는 전제 하에서 국제거래나 국제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소비자나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경영의 투명성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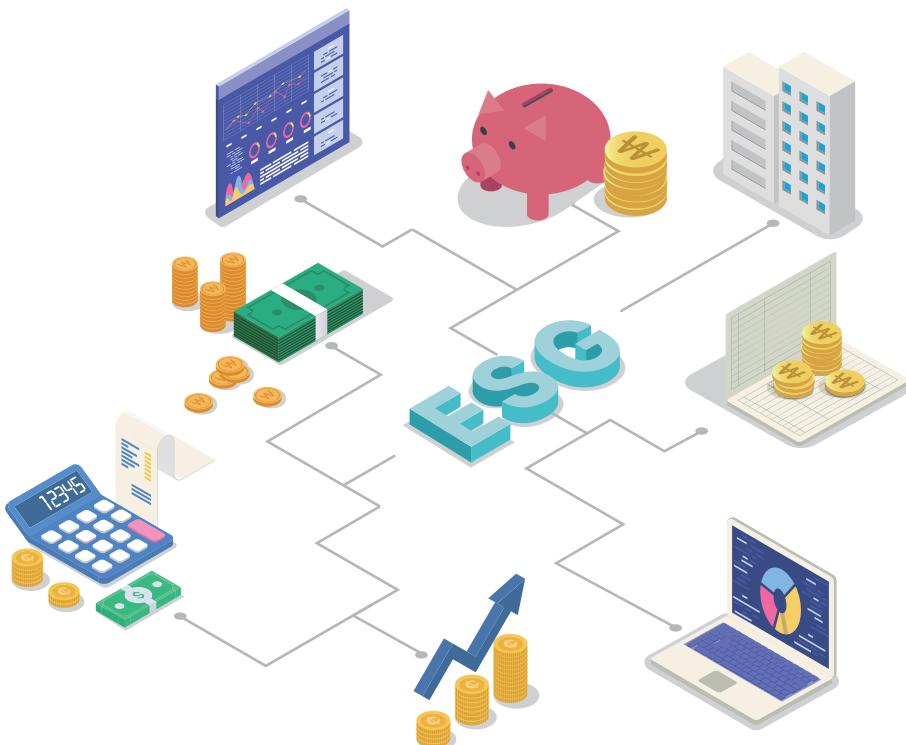
첫째, 국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Consistency)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나 보고서들이 상호간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과세당국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거래소 공시정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과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각 관계회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Coope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료의 일관성 유지와 정확성(Correctness)이 지속적으로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회사 또는 기업내 각 부서들간 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업의 자금세탁 방지와 뇌물 방지 경영사례

사례돌보기



금융기업의 부정 결제 금융사고가 한동안 이슈가 되었다. 금융당국은 사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고객의 신뢰는 떨어졌고, 사고가 나면 고객의 모든 은행 계좌가 범죄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업의 경우 개인정보 도용 등에 의한 이상을 제대로 감지 못해 금융사고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다른 분야의 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처럼 한 번의 실수로 기업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의 컴플라이언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례 돌보기에서는 위와 같은 이슈를 고찰하고, 금융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 및 개선을 통한 윤리경영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HSBC은행

2012년 HSBC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자금 세탁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19억 달러(\$1.92 billion)의 벌금을 지불했다. HSBC은행은 자금 세탁 방지 및 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사업 개선 명령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HSBC는 금융 범죄 퇴치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최근에야 10년간의 집행명령이 종료되었다.

HSBC의 GTRF(Global Trade and Receivables Finance) 사업부는 금융 범죄 개선의 일환으로 자금 세탁 방지(Anti Money Laundering, AML) 감시시스템과 자동화된 제재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로운 AML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국제 무역에 있어 의심스러운 패턴과 잠재적 범죄 네트워크를 식별하며 금융 범죄를 탐지하고 감시한다.

또한 최근 HSBC Holdings는 실리콘 밸리에 기반을 둔 인공 지능 스타트업 Ayasdi와 협력하여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보다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레그테크(regtech) 기술을 규정 준수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HSBC 은행은 AI 기술을 구현해 전통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수행해 온 ‘돈세탁 방지 조사’를 자동화하였고, AI 기술 도입 후 조사 건수가 20% 감소하였다.

2. 국민은행

KB금융그룹은 윤리경영 고도화를 위해 2022년 4월 파트타임과 계약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과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및 뇌물 정책’을 제정하였다.

KB금융그룹은 주요 업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윤리경영 위반행위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의 전 계열사는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령휴가를 실시하여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행위의 경증을 판단하여 징계하고, 내부통제 관련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KB금융그룹은 컴플라이언스 교육 시 윤리경영 위반사례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KB금융그룹의 윤리행동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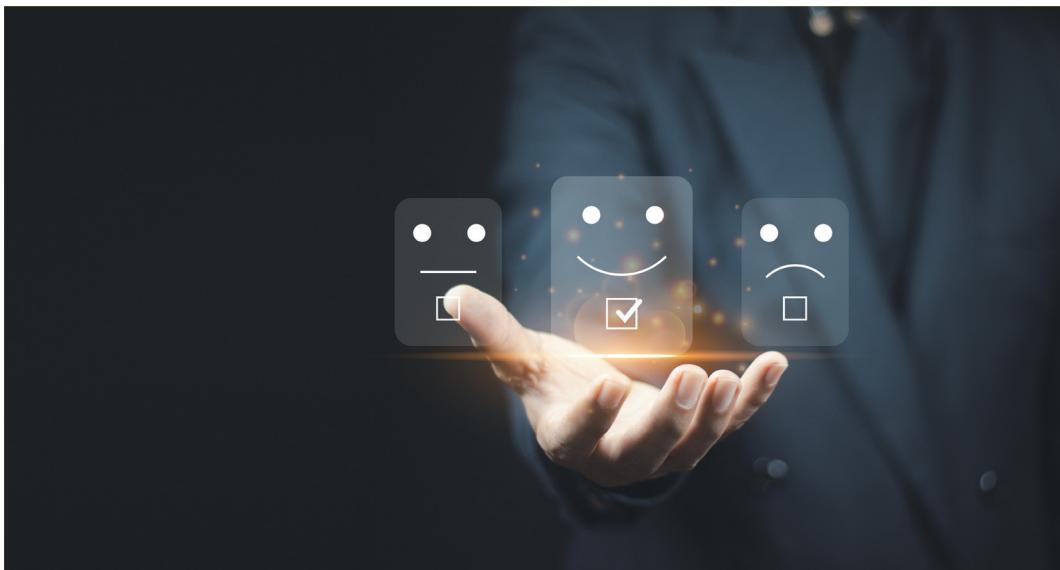
이해상충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은 사적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함•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영리행위 및 부도덕적인 행위 금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는 행위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상의 지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이행• 공정거래 관련 법령 숙지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 도모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 등에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및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금지
청렴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체결 시 가격, 품질, 기술 등을 기준으로 신뢰성 및 성실성을 고려한 공급업체 결정• 본인 또는 친인척 등과 관련된 협력사에 대한 우선적 대우 금지• 협력사로부터의 금품, 향응 등 부당 이익 수수 및 요구 금지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 운영규정(기부 대상, 기부금지 대상 등 주요 기준 및 처리절차 포함) 적용• 정치인 및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금지

출처: KB금융그룹_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KB금융그룹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과 ‘그룹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지침’ 등 관련 제도를 제정하였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KB국민은행은 디지털 기술 기반 CDD(고객확인의무, Customer Due Diligence) 이행 프로세스를 도입해 고객이 요청한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앞서 본사에서 사전 CDD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이행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내규 등 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외 점포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을 위해 외부 컨설팅 업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참고

- HSBC, ESG review 2021
- <https://www.reuters.com/article/us-hsbc-ai-idUSKBN18S4M5>
- <https://www.theglobaltreasurer.com/2019/09/27/hsbc-boosts-efforts-to-improve-financial-crime-detection/>
- <https://www.bbc.com/news/business-59689581>
- KB금융그룹_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행동하는 윤리경영 코너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반부패·윤리경영 가이드라인들이 제시하는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시스템 구축방법 ‘Plan-Do-See’중 ‘Do(실천)’단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부패리스크 식별과 평가

리스크 식별

누락없이 부패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K-CP(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는 기업의 업무처리과정을 분석하여 부패가 발생할 만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식별하거나, 워크숍·인터뷰·설문·익명게시판 등을 통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부패사례와 법원 판결을 이용하여 부패 발생 빈도와 발생상황,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인식할 수 있다.

리스크 평가

리스크 평가에 대해 K-CP와 UNGC 지침서, ISO 37001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리스크 평가를 통해 부패의 영향력(부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입는 재정적 피해, 평판 훼손 등)과 발생가능성을 수치로 환산하고 계량화, 부패위험 도식화로 각 리스크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하여 위험수준을 결정한다. 리스크 평과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 수준이 높은 리스크부터 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범위 및 방법: 조직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 평가 및 완화를 위한 조직의 현재 관리방법에 대한 적절성 및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전 직원과 일선 부서에서 리스크를 식별하면 준법·윤리경영 전담조직에서 조직 전체의 부패리스크를 종합하여 제출된 평가 결과가 적절한지 전체적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동일한 부패리스크가 조직이나 부서에 따라 달리 평가된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 발생가능성 영향력 평가 시 대내외 의견수렴, 자문을 활용하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주기: 연1회 이상
- 제3자 자문: 외부 컨설턴트를 통한 리스크 평가는 내부 평가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위험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제3자 자문 활용 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2

인식과 교육훈련

인식과 교육훈련을 구성하기 위한 대상선정 및 내용구성 방법 그리고 주기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은 K-CP와 UNGC 지침서, ISO 37001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대상: 임직원 및 사업 파트너(공급업체 등 필요시 제3자까지 확장 가능) 부패리스크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별 위험도와 위험 허용치를 고려하여 교육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지 고위험 부서를 대상으로만 진행할지 고려하여 실시한다. 또한 구체적인 문제와 특정집단(고위 경영진, 전담조직 등), 공급업체 등의 특성에 따라 맞춤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내용: 조직은 부패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역점을 두어 직원들에게 충분한 인식과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교육의 내용은 조직의 부패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에 맞추어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 (1) 고위 경영진의 실천의지(기업 전체의 부패 무관용 원칙 강조)
- (2) 정책 및 절차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개발 목적
- (3)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조사체계
- (4) 기업 규범 및 가치의 준수 의무(실천 사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5) 부패 상황 직면 시 대응 방법
- (6) 이용 가능한 훈련과 자원에 대한 정보

- 주기: 최소 연 1회, 임직원 대상의 표준화된 의무교육 시행을 통해 반부패 프로그램이 모든 임직원의 핵심안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또는 규정 갱신 시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신고시스템과 위반행위 대응

신고시스템 규정 마련 및 운영

K-CP를 참고하면 신고시스템 규정은 다음과 같이 마련 및 운영할 수 있다.

조직은 신고 처리 및 보호·보상 관련 기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신고 처리 부서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관의 부패리스크 정보는 향후 리스크 관리에 활용된다.

시스템 규정에는 (1)신고 접수 시 대응절차 (2)추가조사 실시여부 (3)신고접수·처리 담당자의 이해충돌 상황 기피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에게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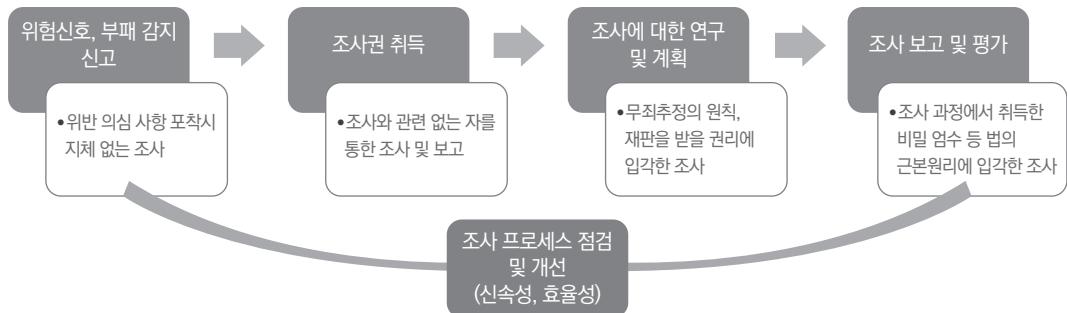
위반행위 대응

UNGC 지침서, ISO 37001 가이드라인에서는 위반행위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 두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신속한 조사: 정기 감사 등 주기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신호, 감지 신고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사항 발생을 포착하면 지체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는 『내부 조사권 취득-조사에 대한 연구 및 계획-조사 보고 및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들을 지명해 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엄수 등 법의 근본원리에 입각하여 진행한다. 이와 같은 조사 과정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반행위 조사과정〉



- **위반사항 해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징계 정책은 제재 목록, 절차와 업무에 대한 지침, 항변기회 부여를 포함해야 한다. 기업은 위반에 대해 제재조치, 위반사항 고지, 개선책 선정 등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여 범죄에 대한 무관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기업은 정부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사항에 대해 발생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으며, 기업과 임직원의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고, 더 큰 제재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
- **내부 신고자 보호:**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고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전보 징계 평가 하향 등)가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 지속적 교육 및 소통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개선, 제보된 정보의 절차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고자에게 사전 고지하여 신고 사항에 대한 조직의 해결 의지와 노력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4

제3자 리스크 관리

K-CP에 따르면 제3자(the third party)란 계약업체 및 공급업체, 유통업체, 합작투자사, 중개인 및 중개업체, 자회사, 계열사, 크게는 고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는 조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제3자의 유형에 따라 리스크에 노출되는 수준과 반부패 정책·절차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관리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의 표는 K-CP를 기반으로 UNGC 지침서, ISO 37001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제3자 리스크 관리 방법〉

안내·교육	- 제3자로 인한 부패리스크 축소를 위해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3자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안내 및 교육
운영규정 및 매뉴얼 공유	- 제3자의 조직의 준법·윤리경영 정책을 준수를 위한 운영규정 및 매뉴얼 공유
상담·신고 안내	- 조직 구성원이 제3자에게 부패행위를 할 경우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부패리스크를 고려한 사업 파트너 선정	- 사업 파트너 선정 시 부패리스크 고려 - 초기 실사와 엄격한 규정을 통한 부패리스크 관리
제3자 모니터링	- 지역의 부패 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방법론을 결정 - 정기적으로 실시 - 외부 컨설턴트에게 이관 가능 - 모니터링 결과 문서화, 보고(감사회, 감독위원회 등)
제3자 반부패 기준 이행을 독려	- 통제 가능한 제3자: 반부패 기준 준수를 요구 - 통제가 어려운 제3자: 준수 유도를 위해 제재 및 인센티브 고려

실사

실사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의미한다. UNGC 지침서에서는 기업은 사업 관계 맺기 전 실사를 시행하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중 반부패 실사는 사업 파트너가 기업의 반부패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지 확인하는 연구 조사 평가, 모니터링 절차를 일컫는다.

〈제3자 반부패 실사〉

실사 범위	- 의무실사: 부패 취약국으로 파견된 모든 사람에 대한 실사 - 선택적 실사: 사업 유지에 핵심적인 공급업체 대상
실사 주체	- 기업/외부 컨설턴트/복합시행
실사 효과	- 사업파트너 역량 파악 - 반부패 프로그램의 적절성 평가 - '경고신호'(외국 공무원 출신 이사, 그림자 이사, 과거 뇌물 수수 전력 등) 유무 확인

참고

국민권익위원회(2022),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2016),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
유엔글로벌콤팩트(2016),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http://bis.or.kr/test003/>



자금세탁 폐해와 방지 노력

영화, '시크릿 세탁소'



* 이미지출처: 네이버 영화

2012년 G20정상회의에서는 OECD 주도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 추진이 과제로 의결되었다. BEPS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조약 같은 국제 과세 기준과 국가 세법의 차이와 미비점을 악용해 세율이 낮은 국가(일명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옮기는 조세회피 전략을 의미한다. 의결 이후 국가간 반부패정책 논의에서 조세회피 방지 및 대응은 빠지지 않는 안건이 되고 있다.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 Co.)’가 보유한 엄청난 분량의 비밀문서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가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사건이 일어난다. 1만 건이 넘는 문서를 전세계 언론인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무기거래, 마약밀매 등 수많은 범죄와 연관된 기록을 발견하였다. 모색 폰세카는 고객의 범죄 행위를 알았지만 침묵하였고,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파나마, 버진 아일랜드 등에 20만여 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고객의 돈을 스위스 은행계좌에 예치하거나 전세계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탈세와 돈세탁을 도운 사실이 밝혀졌다.

영화 시크릿 세탁소는 엘렌이라는 중년 여성이 결혼 40주년 기념 여행에서 탄 작은 유람선의 전복 사고로 남편을 포함한 마을주민 21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엘렌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다 보니 보험회사가 가입한 2차 보험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 실제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또 다른 등장인물은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준 대가로 받은 2천만 달러의 무기명주가 신탁사를 통해 하루아침에 100달러도 안되는 가치로 떨어졌음을 모색 폰세카로부터 전달받는다. 영화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합법이라는 틀 안에서 범해지는 부정·부패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기업과 부자가 세금을 회피하고 돈세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시크릿 세탁소는 사회의 부정부패로 개인과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파나마 페이퍼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의 합법적 범죄가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 영국 원유사 헤리티지오일은 우간다의 유전을 구매할 때 지불할 세금 4억 달러를 피하기 위해 모색 폰세카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다. 결국 헤리티지 오일은 세금을 면하였는데, 이때 우간다의 국가재정 수준이 열악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ICIJ는 지적한다. 세금은 빈곤과 불평등 수치가 높은 국가들에게 필수적인 수입원으로써 빈곤 수치가 높은 국가의 정부는 의료, 교육, 공공처리시설, 인프라 및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 서비스 비용을 세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세입 능력이 감소하면,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정발전 목표(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등)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 또한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 문제에 관해서 국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호차에서 자세하게 다룬 2023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PIEF)에서 공정경제를 위한 조세협력 및 반부패를 주요 아젠다로 하는 것도 이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

나라경제(2017.09),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OECD·G20 공동 대응 나섰다.

뉴스스타파(2016.04.05),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조세피난처의 희생자들

한아프리카재단(2022.01.04), 지속 가능한 세입을 위한 G20/OECD-아프리카 간 조세협력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뉴스클립

국민권익위,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 소개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ACWG) 회의(이하 회의)에 참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등 반부패 정책을 소개했다. 회의는 반부패 관련 국제공조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며 의장국은 그 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요 반부패 주제를 선정·제시하고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수립한 반부패 원칙 등의 성과물을 연말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한다. 이번 회의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 이탈리아를 비롯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가했다. G20 반부패 원칙 마련을 위한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부패 척결을 위한 정보공유 증진, 부패범죄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부패 척결을 위한 법 집행 협력 강화,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 등이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특히 2일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과 관련해 지난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운영 등을 소개했으며 G20 반부패실무협의회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반부패 의제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반부패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3월 1일

https://test.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4250

국민권익위, '22년 청렴윤리경영 실천·확산 유공기관 대상 포상'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청렴윤리경영 실천·확산 유공기관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청렴윤리경영 CP)을 적극 도입·운영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청렴윤리경영 CP는 공기업 등이 경영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하고, 각 기관에 내재해 있는 부패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예방·관리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과 관련 활동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청렴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 상 50개 지표를 적용해 기관별 실적을 심사했다. 그 결과 2021년 8월 청렴윤리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윤리경영 CP를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한 1차 시범운영 기관 중에서 제도 개발 및 정착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위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경영 투명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를 20위권대로 도약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청렴윤리경영 CP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3월 16일

https://test.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4436

국내외 동향

SVB 파산으로 ESG펀드의 ‘거버넌스’ 소홀 지적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SVB(실리콘밸리은행, Silicon Valley Bank) 파산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SVB 내에 작년 상당 기간 최고리스크책임자(CRO)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VB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의 ESG평가에서 A등급을 받음). 이에 ESG펀드들이 환경·사회·거버넌스 중 기후목표 등 환경 측면에 과도하게 골몰하다가 거버넌스 리스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VB 최고리스크책임자의 장기간 공석은 SVB 내에 은행을 경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위기를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임원이 사실상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규제당국이 초대형은행들에 대한 감시에 집중하다보니 미국 내 자산규모 16위의 SVB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ESG투자업계에서 자산운용사가 사회 및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배제한 채 기후 포트폴리오 구축에 몰두하면 SVB 파산과 같은 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파이낸셜 타임즈 2023년 3월 15일
<https://www.ft.com.ezp.lib.cam.ac.uk/content/31af4574-a163-4d42-baee-ed286fa9e93a>
- ESG경제 2023년 3월 15일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4>

ISSB, ESG공시기준 최종안 합의, 6월 공식발표 예정



ISSB(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는 2023년 2월 26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보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 초안의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일반 요건)과 IFRS S2(기후 관련 공개) 기술적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에 합의했다. 표준의 내용이 완전히 합의됨에 따라 ISSB는 올해 6월 안에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철저한 최종안 작성 및 공식적인 투표 프로젝트가

남은 기간 진행될 예정이며 ISSB는 신흥국·개도국·소규모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완하는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거듭나도록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ISSB는 이미 표준의 사용을 돋기 위한 완화 및 치침 패키지를 발표하여 표준에 대한 기업의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

- IFRS 2023년 2월 17일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3/02/issb-ramps-up-activities-to-support-global-implementation-ahead-of-issuing-inaugural-standards-end-q2-2023/>
- 임팩트 온 2023년 2월 21일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66>

한국ESG기준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발간



한국ESG기준원은 2월 28일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2012년에 처음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이래 6차 개정본이다.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이사회·감사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감사 △임원 보수·성과 보상 △재무제표·배당 △자본구조 △기업구조조정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기업내부통제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한국ESG기준원은 이번 개정본이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한 주주총회 안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반영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기존 가이드라인 조항을 명료하게 수정하여 의결권 행사 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이투데이 2023년 3월 5일
<https://www.etoday.co.kr/news/view/2227451>
- 임팩트온 2023년 3월 5일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025>

블랙록, ESG 위반업체 ETF펀드에서 퇴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자사가 운영하는 아이쉐어(iShares) ETF펀드에서 위반업체를 퇴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발표했다. 블랙록의 ‘신속한 퇴출(fast-exit)’ 규칙은 지난 여름부터 논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ESG기준을 위반한 회사들은 최대 45일 안에 퇴출된다. 이번 결정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지수를 추적하는 유럽 상장 ESG ETF 35개를 대상으로 하며 월 단위로 기업들의 퇴출 여부가 검토된다. 인권침해, 아동 노동 및 독성 폐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ESG 지표에 걸쳐 ESG 논란을 측정하고 기업의 ESG 논란 점수가 0~9점으로 떨어지거나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이행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MSCI가 지수에서 제외시키면 펀드에서의 퇴출 작업이 시작된다. 블랙록은 이번 변화가 저조한 ESG 실적을 ETF 전반에 더 빨리 반영하고 논란이 가장 심한 기업들의 퇴출을 둘러싸고 시간 문제를 재검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 로이터 2023년 3월 9일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blackrock-fast-tracks-eviction-esg-violators-msci-linked-etfs-2023-03-09/>
- 임팩트 온 2023년 3월 11일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089>



글로벌 비즈니스 윤리

웹툰

윤리네컷



참고: 코참넷(2006), '해외진출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관행과 특성'.
린다 트레비노, 캐서린 넬슨(2021), '기업윤리 가이드'



행사소식

2023 ESG Forum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전략

ESG 패러다임에 따른 기업 경영 및 투자환경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기후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가 2023년 금융/산업 부문의 ESG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포럼

주최 한국투자증권, 사단법인 넥스트

일정 2023년 4월 13일(목)

장소 한국투자증권 4층 대강당

참고 <https://nextgroup.or.kr/?6M0htrJ2>

ICC International Integrity & Anti-Corruption Conference 2023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네덜란드 주최로 학계, 공공·민간 부문의 전문가 및 NGO가 청렴성 및 반부패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기업과 이사회의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컨퍼런스

주최 ICC 네덜란드

일정 2023년 6월 8일(목)

장소 네덜란드, 해이그 평화궁(Peace Palace)

참고 <https://www.weekvandeintegriteit.nl/slotconferentie/>



퀴즈

Q. 다음 중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금세탁 방지 이니셔티브 참여
- ② 익명의 회사를 통한 수익 은폐
- ③ 혁신 기술을 이용한 방지 프로그램 개발
- ④ 내부통제 강화

퀴즈 응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esg@assist.ac.kr) 앞으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4월 24일 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
③

지난 호 정답자는
권현주님, 백설희님, 안경민님, 이희정님, 편지영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